

企劃特輯

## '88漁港懸案

# 4, 港灣廳의 漁港區運營



管理의 効率化 위해서

## 水產廳에서 管掌해야

張順福(仁川市水協 組合長)

중국 五經의 하나인 ‘禮記’ 중 ‘樂記篇’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고 한다.

“大樂必易, 大禮必聞”

과문(寡聞)한 탓으로 아주 깊은 뜻은 새길 수 없으나, 대체로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

“예술은 쉬울수록 위대한 것이고, 법률이란 간단할수록 좋은 것이다.”

물론 법률이 간단할수록 좋다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恣意的) 해석을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고, 최소한의 기본 골격만 갖춰 주면 순리에 따라 이를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 높은 생각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이 방법이 순리이고 대도(大道)인데도 법률로 인하여 그 길이 꽉 막혀버린다면 그 법률은 사실 존재 의미

가 불투명해져 버린다.

허긴 최초에 입법을 할 때 사후에 일어날 문제점까지 모두 예상 한다면 더 이상 말할 바도 없지만 ‘솔로몬’ 왕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10~20년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상하고 입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法은 順理대로 改廢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은 순리에 따라, 시의에 맞게, 상황의 전개됨을 보아 수시로 개폐(改廢)되어야 옳다는 뜻일 것이다.

최근 서서히 고개를 들기시작한 어항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주장은 이런 점에서 때 늦은감이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은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 1941호로 제정된 항만법과 1969년 5월 19일 법률 제 2106호로 제정된 어항법과의 업무분할이 매우 애매한데서 오는 것들이다.

사실 어항 하나를 놓고 두 기관(수산청·해운항만청)이 각기 비슷비슷한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법률에 관한 문외한인 내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며, 다만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하나로써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사항만 한두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항만법 제21조 (임항지구) 2항 4호 어항구(漁港區)에 관한 것이다.

항만법 제2조에서는 ‘지정항만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역이 지정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는 이 ‘지정항만은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해놓았고, 제18조 1항에는 필요한 경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을 관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제21조 1항은 바로 이 제18조 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해운항만청장은 임항지구(臨港地區)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는 것이다.

즉, 2항에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 ‘임항구역 안에서는 필요한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구(分區)를 설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종류 6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상항구(商港區), 2. 특수물자 항구, 3. 공업지구, 4. 어항구(漁港區), 5. 방카항구, 6. 보안항구(保安港區)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6가지를 곰곰히 살펴 보았을 때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이질적인 내용 1 가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4. 어항구에 대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항만청이 어항개발에 소홀히 해왔다거나 미온적이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다만 피부로 느끼는 감도가 수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무청과는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수산업은 어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업이요, 어항은 이들의 기지인 것이다. 어항시설이 허술하여 재해시 위험이 예상된다거나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그 것은 생업의 터전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해운항만청이 이점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다만 법의 운용상 대부분에게 골고루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집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같은 어민들의 견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운항만청이 아무리 특별한 관심을 쏟는다 해도 그 양은 산술적으로 1/6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 ■ 主務廳에 業務를

그렇다면 결론은 너무도 자명하다. 해당 주무청에 해당 업무를 돌려주면 될것이 아닌가.

문제는 관계 법률이다. 현행법으로는 제1종 지정항만은 앞에서 살펴본 항만법에 따라 항만청장의 관할항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항만청장은 임항구역 안에서 이용구역을 선포하면 그 항구는 성역(聖域) (?)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서 지정항만 이용구역을 항만청장이 어항구(漁港區)로 정하면 수산청장의 관할에서 벗어나고 만다. 아무리 어민의 여론이 빛발쳐도,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도, 주무청의 무능을 비난해도, 엄연히 실정법에 위배되는 현실앞에서는 뾰족한 묘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시설확장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어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투자의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버리고마는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것이야 말로 옷에 몸을 맞춰 입어야

만 되는 억지 춘향이가 아니고 무엇이랴. 단 한줄의 법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된다면 그 법률은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성문화(成文化)된 법이 없이도 아무런 불편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 왔다는 부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우리도 하루 빨리 법률 운용에 있어서의 탄력적 적용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누구보다도 수산업에 관한 한은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수산청으로 어항에 관한 업무를 이관시켜 버리면 될 일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위배된다면 바로 그 법을 손질하면 될 일이 아닌가.

법에 관하여 문외한인 탓으로 자세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잘 알 수 없으나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몇가지만 손질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우선 항만법 쪽인데, 제21조 2항의 지정항만 이용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4. 어항구를 아예 삭제해 버림으로써 어항에 관한 한 근본적으로 업무 분장에 선을 긋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항법쪽에서 그것을 수용하면 될 것이다.

즉, 어항법 제6조 어항의 관리는 ‘항만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제1종 지정항만내 지정된 이용구역이라 할지라도 어항구의 관리는 수산청장이 담당한다’라고 고치면 될 것 같다.

또한 어항법 제25조 ‘어항이외의 항만’ 조항 가운데 제4조 ‘어항의 지정 및 해제’ 규정에 의한 어항이외(항만법에 의한 지정항은 제외한다)의 항만은……으로 되어 있는것을 ‘(항만법에 의한 제1종 지정항만 중 어항구는 포함한다’라고만 고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관계 당국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어항구에 관한한 모든 업무가 수산청장이 관장하게 된다면 책임과 권리, 의무가 보다 명백해짐에 따라 어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혼란이 없을 것 같다.

## ■ 組合的機能위해서도

더우기 그동안 수산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투자가 미흡했던 어항의 개발을 주무청에서 모두 떠맡게 됨으로써 수산업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못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어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소망스런 일인 동시에 어민의 소득증대에

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항에 관한 업무를 통틀어 수산청에서 관장하게 된다면 어항별 시설을 보다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고, 어항기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취약한 시설은 그때그때 개·보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항수축을 비롯하여 어선편의 시설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선의 입·출항 내지는 단순한 기항에 국한하여 생각하던 어항에 관한 사고방식을 어민의 소득과도 연결시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수하여 국민관광·국민휴양지로 개발·활용한다면 아마도 무시못할 어업의 소득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할 것이다.

모름지기 모두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면 그것을 즉시 수용하는 넓은 아량이 필요한 때이다. 몇가지 사사로운 이해득실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이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에 따른 직접 피해자는 다름아닌 어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어항법-이번에는 분명히 개정하여 시설투자부족을 해소하고, 어민을 위한 정책수립의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투표를 거친다든지 하는 거창한 절차상의 번거러움이 없다면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을 것이다.